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주차관리과장 나혜진】

가.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을버스 운송 안정화 기여 및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영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안 제12조제3항 및 〔별표 1〕 비고 6.)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서 '인근'의 범위 확대(안 제19조)

○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별표 1〕)

다. 참고사항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6.

○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을버스 운송 안정화 기여 및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영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

- 현 행: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
- 개정안: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자동차

○ 정기권 기간 연장 (〔별표 1〕 비고 6.)

- 현 행: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
- 개정안: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서 '인근'의 범위 확대 (안 제21조의5)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300대 이하일 때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 현 행: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

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

- 개정안: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별표 1〕 비고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6.5.)내용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변경

○ 타법 폐지 및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조문 정비(〔별표 1〕 비고 8.)

- 현 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4.3. 폐지)
-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반영}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별표 1〕 비고 16, 1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의원의 선거) 삭제(2016.12.13.)로 인한 인용 법조항 삭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2021.1.5.)

○ 상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문 삭제 (〔별표 1〕 비고 22.)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23. 12. 29.)으로 인한 해당 조문("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 삭제

○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월 정기권 관련 조항 개선에 따른 주차장 중지 또는 폐지 시 요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와 행정기관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정기권 사용 대상 차량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00미터 및 300미터 제한은 협소한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00미터 및 600미터로 완화는 도심 내 주차 문제 해소 및 주차장 설치 유연성 증대가 예상됨.

○ 기대효과

주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월 정기권 반환 기준 명시로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명확한 정의는 대상 차량 구분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추가적인 주차 공간 마련으로 주민 및 사업자의 주차 불편 완화를 기대하고, 반환 기준 명시와 용어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 부담 감소가 예상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반환 기준과 설치 기준 변경의 실효성 및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별표 1]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제8조의2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제15조 제2항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제9조 제3항및제4

항을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법 제19조 제4항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8. 21.] [일부개정 2024. 5. 20 조례 제9277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3. 12. 29.>

<비고>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